

# 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2년 7 월 2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 
(영문명) 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CO  
(홈페이지) <http://www.shbnppam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- 2  
(전 화) 02- 767- 5858

대 표 이 사 : 최 방 길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팀장  
(성 명) 김 도 훈 (전 화) 767- 9068

작 성 자 : (직 책) 차장  
(성 명) 이 영 규 (전 화) 767- 9080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 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 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 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10-1-2호)

현금배당 결정

1. 배당구분		결산배당
2. 1주당 배당금(원)	보통주	2,063원
	우선주	-
3. 시가배당율(%)	보통주	-
	우선주	-
4. 배당금총액(원)		31,100,000,000
5. 배당기준일		2012.3.31
6. 배당금지급 예정일자		-
7. 주주총회 예정일자		2012.6.22
8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		2012.6.22
-사외이사참석여부	참석(명)	3
	불참(명)	3
-감사(감사위원)참석여부		참석
9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현금배당(결산·중간·분기)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신고한다.
- 주2) “배당구분”은 결산배당,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을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3) “1주당 배당금”은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하되 차등배당의 경우 그 내용을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기재한다.
- 주4) “시가배당율”은 배당기준일 전전거래일(배당부 종가일)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한다.
- 주5) 상기 기재사항 외의 결산배당의 경우 연간 배당내역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6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

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